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75
------------	-------

제출년월일 : 2011.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등록 차량 및 다등이자녀 가정 소유 차량의 공용주차장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규정 신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차량의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변경함(별표1, 비고 제7호가목)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 조문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제3조제8호, 별표1, 비고 제7호‘나’·‘다’목 및 제15호)
- 다. 다등이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할인율을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등이 행복카드(막내가 만 13세 이하 발급)’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할인으로 변경함(별표1, 비고 제17호)

라. 공영주차장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함.
(별표1, 비고 제20호 및 제21호)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차장법」(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9조 및 제14조 등
- 2)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220호, 2010.3.31) 제32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2011.8.4) 제4조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503호, 2011.3.30) 제19조
- 5)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10호, 2011.4.30) 제8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1) 입법예고(2011.9.8 ~ 2011.9.28) 결과 : 의견 반영
- 2)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파영향 자율평가 : 의견 반영
- 3) 조례·규칙심의회(2011.9.29) : 일부 수정
- 4) 서울특별시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각 한다.

제3조제8호 중 “제72조의3”을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중 제7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단, 학교 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 수강 시마다 90분 면제
-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 정기권 50% 할인(단, 중복할인 불가)
21.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생략)</p> <p>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부과 한다. (후단 생략)</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현행과 같음)</p>
<p>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1.~7. (생략)</p> <p>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p>	<p>제3조(주차거부금지)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p> <p>1.~7. (현행과 같음)</p> <p>8. ----- 제88조 ----- ----- -----</p>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p>1. ~ 6. (생략)</p> <p>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현 행	개정안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8. ~ 14. (생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17. 다동이행복카드소지자로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8.~19. (생략)	18.~19.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u>< 신설 ></u></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p> <p>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단,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p> <p>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 수강 시마다 90분 면제</p> <p>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 정기권 50% 할인(단, 중복할인 불가)</p> <p>21.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p>
--	--